

##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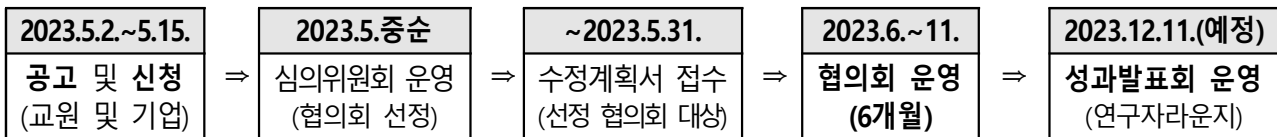
- 가. 산·학·연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수요 발굴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신규 개발 아이디어 도출
- 나. 협의회 참여 주체 간 협업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산학협력사업 기획
- 다. 가족회사의 기술개발 능력제고 및 우수학생 발굴 기회 확대

## 2. 개 요

- 가. 사 업 명: 2023학년도 강소산학협력협의회
- 나. 사업기간: 2023. 5. ~ 2023. 12.
- 다. 참여대상
  - 1) 신청자격: LINC 3.0 참여학과 전임교원 또는 제주대학교 가족회사(실버등급 이상)
  - 2) 구성인원: 제주대학교 가족회사(브론즈 등급 이상), LINC 3.0 참여학과 교원 및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구성

## 3. 운영 내용

- 가. 신청기간: 2023. 5. 2.(화) ~ 5. 14.(일)
- 나. 신청방법: 신청서(서식1 ~ 서식1-3) 작성 후 E-mail 제출(linc21@naver.com)
  - ※ 기업 참여 시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멤버십 가입(주관사: 실버등급 이상/참여자: 브론즈 등급 이상)
- 다. 운영기간: 2023. 6. 1. ~ 2023. 11. 30. / 6개월
- 라. 지원금액: 협의회 당 300만원 내외 지원(4개 내외 협의회 운영 예정)
- 마. 운영 절차



- 바. 협의회 구성
  - 1) 협의회 주제: LINC3.0 특화분야(바이오융합,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관광) 중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

특화분야	주요내용	주제 키워드(예시)
<b>바 이오융합</b>	청정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식음료, 뷰티제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헬스케어제품, 간편식가공식품, 맞춤형피부 미용제품, 천연물기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메디바이오, 천연세정제품 등

특화분야	주요내용	주제 키워드(예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연관 산업, 전기차 內 사용이 종료된 이차전지의 재제조 및 활용기술을 통해 지역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 지역 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보급→활용→산업로 이어지는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신재생에너지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IT융합 전력관리시스템, 에너지소요절감시스템, 에너지변환 기술, 에너지 생산 / 저장 / 수요관리 관련 기술 개발 및 고도화,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블록체인 핵심 산업 고도화 등
스마트관광	관광 산업에 디지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패러다임 대응 및 관광서비스 고도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플랫폼 서비스, 확장가상세계 체험관광상품, 산업융합IT 서비스,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시 활용 서비스, 데이터활용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가상화디지털트윈서비스 등

2) 협의회 구성 시 유의사항

- 6개월 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신청(잔액 발생 불가함)
- 제주대학교 LINC3.0 참여학과 전임교원 필수 참여, 협의회 대표는 전임교원 또는 기업 임직원(가족회사 멤버십 실버등급 이상)으로 구성
- 협의회 운영을 통한 특화분야 관련 산학연계 수요 발굴 및 아이디어 도출 필수
-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집행은 제주대학교 LINC3.0사업단 규정을 따름

4. 세부 내용

구분	기간	비고
참여교원 및 참여기업 모집	2023. 5. 2. ~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wo track 수요 접수: 교원 또는 기업 신청</li> <li>◦ 서류 접수방법: E-mail 제출 (linc21@naver.com)</li> <li>※ 협의회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파견교원, 외부기관의 국외연수 및 파견자로 선정된 교원</li> <li>- 각종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교원</li> </ul> </li> </ul>
심의위원회	2023. 5. 18.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서류 심사 및 선정</li> </ul>
참여기업 선정 안내	2023.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사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안내</li> </ul>
수정운영계획서 접수	~ 2023.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사에 따른 협의회별 예산 및 계획서 수정</li> <li>◦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협의회 운영</li> </ul>
협의회별 운영	2023. 6. 1.~ 2023.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별 예산 기간 내 운영(6개월)</li> <li>- 산학협력 수요 발굴 및 아이디어 수집 등</li> </ul>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2023. 12.(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종료에 따른 협의회별 운영결과 보고서 접수</li> <li>◦ 서류 접수방법: E-mail 제출 (linc21@naver.com)</li> </ul>
성과공유회 운영 (연구자라운지)	2023.12.11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공유회(연구자라운지) 운영</li> <li>- 협의회 운영 성과 공유 및 산학연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도출</li> </ul>

※ 향후 일정 변동 가능

## 5. 지원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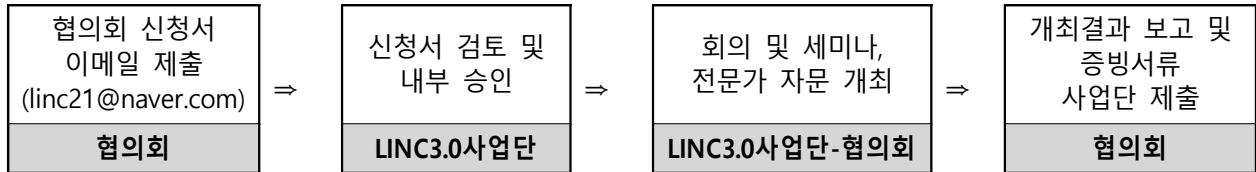
지원 항목	세부 지원내용
<b>회의비</b> (간담회비, 다과비)	- 간담회비: 30천원(다과비 포함) 이내/1인 - 다과비: 1인 5천원 이내
<b>세미나비</b> (간담회비, 다과비 인쇄비, 장소 대여료, 강사료 등)	- 강사 항공료는 개인카드 사용 후 후불지원 ※ 자세한 내용은 운영 매뉴얼 참고
<b>전문가 자문비</b> (간담회비, 다과비, 전문가 자문료, 항공료)	- 전문가 항공료는 개인카드 사용 후 후불지원 ※ 자세한 내용은 운영 매뉴얼 참고
<b>출장비</b> (LINC3.0 참여학과 교원 출장비 지원)	- 협의회 운영 관련 출장비 지원 (참여교원 한정)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6. 기대효과

- 산학연계 프로그램(기업지원, 교육과정 등) 및 아이디어 수요 발굴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상호 기술 협력 및 아이디어 교류를 통하여 신시장 창출 또는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 참여 학생들에게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기업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직업능력 제고 및 취업기회 확대

\* 첨부: 제주대 LINC3.0사업단 2023학년도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매뉴얼 1부. 끝.

### 1. 예산 집행 프로세스



### 2.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세부 지원내용
<b>회의비</b> (간담회비, 다과비)	- 간담회비: 30천원(다과비 포함) 이내/1인 - 다과비: 1인 7천원 이내
<b>세미나비</b> (간담회비, 다과비 인쇄비, 장소 대여료, 강사료 등)	- 강사 항공료는 개인카드 사용 후 후불지원
<b>전문가 자문비</b> (간담회비, 다과비, 전문가 자문료, 항공료)	- 전문가 항공료는 개인카드 사용 후 후불지원
<b>출장비</b>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협의회 관련 LINC3.0 참여학과 교원 출장비 지원)	- 일비/식비, 숙박비, 항공료 지원 · [관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관외] 4시간 이상: 5만원 지원

### 3. 항목별 집행 기준


항 목	내 용	제출서류	제출기간
회의비	- 협의회 관련 간담회비 · 1인당 최대 3만원 이내(다과비 포함) · 다과비(7,000원 이내/1인)	- 서식3(회의 계획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
		- 서식4(회의록) - 서식4-1(회의 참석자 명단) - 서식4-2(회의 증빙사진)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 제출
세미나비	- 협의회 관련 간담회비 - 현수막 및 X배너 제작, 책자 인쇄비 (견적서 및 납품서, 납품사진) - 장소 대여료(견적서 내역 기재) - 강사료 및 강사 항공료	- 서식7(세미나 계획서)	세미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
		- 서식8(세미나 결과보고서) - 서식8-1(세미나 참석자 명단) - 서식8-2(세미나 증빙사진) - 강사료 지급 서류	세미나 개최 5일 이내 제출
전문가 자문비	- 협의회 관련 간담회비 - 전문가 자문료 및 항공료 (1인 50,000원/시간, 1일 최대 4시간)	- 서식5(전문가 자문계획서)	자문 예정 5일 전까지 제출
		- 서식6(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 서식6-1(자문 참석자 명단) - 서식6-2(자문 증빙사진) - 자문료 지급 서류	자문 개최 5일 이내 제출

항 목	내 용	제출서류	제출기간
출장비	- LINC3.0 참여교원의 출장비 지원 (협의회 관련 한정)	- 서식9(출장신청서) - 출장신청 공문	출장 실시 이전 3일 이내 제출
		- 서식9-1(출장보고서/사진 포함) ※ 관외 출장의 경우 별도 영수증 필수 ※ 항공비, 숙박비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출장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강사료 및 자문비 지급 필요 서류 -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강의자료,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항공권 및 항공영수증 - 강사료 및 자문비의 경우 제주대학교 소속 교원은 지급 불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하여 지급			


#### 4. 기타 사항

- 협의회별 지원 예산: 협의회 당 300만원 내외 지원
  - 협의회 사업계획 심의 및 편성예산에 따른 조정 가능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단 법인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제된 사항은 지원불가
- 카드영수증(원본), 참석자명단, 증빙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원비 지급 불가
- 간담회비에 주류 결제 불가
- 다과비 영수증 내역 기재 필수
- 회의 및 세미나, 전문가 자문 계획서와 다른 변동사항은 지원 불가
- 중간점검을 통한 협의회 지원비용 조정 가능
- 협의회 운영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운영결과보고서(서식10) 1부, 운영결과보고 확인서(서식10-1) 1부 제출

붙임 1.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1부. 끝.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 국내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 자격구분

구분(직급)		자 격 기 준		
		소속기관	대학	기업·기관·단체
A급	책임급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경력 소유자	3급 이상 직원
	선입급	조교수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4급, 5급 직원
B급	원급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6급 이하 직원
	기타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책임급, 선입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기능직 직원

○ 지급 기준액

구분	기술지도(지문)료	강연료(1회당)	비고
A급	200,000원(1일 4시간 기준)	400,000원(2시간 기준)	제세 포함
B급	*4시간 초과 시 30만원 이내	300,000원(2시간 기준)	

- 주1) 위의 자격기준에 따라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름
- 주2)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주3) 좌장, 토론자, 사회자 목적 등의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나,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4) **강연시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마다 100,000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에 따름

○ 기타

-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관리 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부서와 별도 논의 후 강사료 지급 기준액을 조정·시행할 수 있음